

## 2021년 객관식 소방공무원법 정오표(8.10)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141 10번 문제 ④	승진요	승진소요
p 162 68번 문제 ②	전문능력성적	전문교육성적
p 165 77번 문제 ①	초과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없다.
p 230 10번 문제 ④	시간선택제근무	시간선택제근무는
p 255 83번 문제 ②③④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p 255 83번 문제 ②	발전과	정책 및 발전과
p 255 83번 문제 ③	소방청 차장	중앙소방학교장
p 255 83번 문제 ④	위원장	소방청장
p 255 83번 해설 대체		③ 틀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된다.
p 255 84번 문제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p 255 84번 문제 ③ 대체		소방청 차장
p 255 84번 문제 ④ 대체		중앙소방학교 각 과장
p 255 84번 문제 및 해설 대체(아래 3p 참조) (법령 개정 21.4.27)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①, ② 및 다음의 사람이 된다. 1.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3.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4.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p 255 85번 문제 및 해설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p 255 85번 해설 추가 (법령 개정 21.4.27)		5)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6) 장·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p 297 55 문제 ②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 서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p 297 55 문제 해설 ②	국가의 이익이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 서 국가의 이익이나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소방공무원교육훈련 개정 [대통령령 제31652호 개정 · 시행, 2021. 4. 27.]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소방청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조정 등에서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으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소방학교의 장에서 소방청 차장으로 조정하는 한편, 시·도별 교육훈련 편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모든 시·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개정 내용

#### 1) 제2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둔다.
  -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장·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5. 교육훈련 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소방청 기획조정관
  -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 3. 중앙소방학교의 장
  -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2) 제3조 제2항

-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히 배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소방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히 배정해야 한다.

#### 3) 제3조의2 신설

제3조의2(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4) 제25조 보완

-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기관의 장은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p 25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에 따른 문제 재구성

### 83.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둔다.
- ②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③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장이 된다.
- ④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회의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해설** ③ 틀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된다.

### 84.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중앙소방학교의 장
- ②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 ③ 소방청 차장
- ④ 중앙소방학교의 각 과장

**해설** ④ 틀림,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3. 중앙소방학교의 장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85.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조정
- ②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
- ③ 교수요원의 양성 및 교수요원의 활용
- ④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해설** ③ 틀림, 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조정  
5)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